

교회법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통권 제25호

학술논문 / 열간

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담임목사 지위와 대표권
- 대상교회 : 천안중부교회를 중심으로 -
- 변화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막 9:1-8절을 중심으로 -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척 개정 필요성
-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쇄와 신설노회
- [서평] 구속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월간

교회법

통권 25호

발행인 : 소재열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등록 : 김포,라00029

인쇄인 : 한명훈

발행일 : 2023. 9. 1.

주소 :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아침 1208)

전화 : (03) 984-9134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담임목사 지위와 대표권
- 대상교회 : 천안중부교회를 중심으로 -
- 변화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막 9:1-8절을 중심으로 -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척 개정 필요성
- 제107회 총회 총남노회 폐쇄와 신설노회
- [서평] 구속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

교 회나 본 교단(예장합동)에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소위 ‘뺨법’이라는 것이 있다.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만든 뺨법’, ‘법치 원칙에서 벗어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총회 결의를 법률로 포장한 뺨법들’, ‘떼로 몰려다니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치를 무시한 뺨법’, ‘총회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만든 뺨법’ 등의 신조어 냈다.

이러한 뺨법들은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교단 헌법>에 의한 사법 체계와 그 해석과 적용, 적법 절차가 무시되니 이해당사들과 이들로부터 조종을 받은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다. 때로는 이러한 뺨법들은 100년 동안 교단총회의 역사성, 정통성, 법통성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한 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지식의 수준을 총회 전체에 일반화시키려는 과도한 열심이 만들어 낸 법치와 사법 체계의 파괴 행위들이 혼란을 초래했다.

그동안 15년 동안 교회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해 연구와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물이 축적되면서 교회와 노회, 총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일조해 왔다. 법은 언제나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좋은 상황에서 원칙과 법의 정신을 교회 현장에 적용하여 교권의 남용, 불법행위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절대화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불가능하게 한다. 소통과 대화의 길이 차단된다면 이러한 불통은 교회의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제 법은 소통을 원한다. 목회자의 독점(독재)과 장로의 월권은 교인들을 피곤하게 한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만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담임목사 지위와 대표권

-대상교회 : 천안중부교회를 중심으로-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목 차

1. 서론
2. 충남노회와 천안중부교회 분쟁 경과
 - 1) 대상교회와 소속인 충남노회의 분쟁
 - 2) 총회의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 구성
 - 3) 충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 4) 충남노회의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
3. 목사 면직판결의 적법성과 효력 여부
 - 1) 면직처분에 대한 당사자들 주장
 - 2)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 3) 면직 처분한 충남노회 적법성 여부
 - 4) 충남노회 면직판결의 효력 여부
- 5) 위임목사 지위 유지 여부
- 6) 소결론
4. 공동의회 불신임 결의의 효력 여부
 - 1) 담임목사 불신임 효력 여부
 - 2) 법령 교회 정관의 소집권자 문제
 - 3) 공동의회 불신임 결의의 효력 범위
 - (1) 1주일(7일) 전 소집 위반
 - (2)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 문제
 - (3) 정관 제40조(재신임 투표)
 - 4) 소결론
5. 결론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전국교회가 있으며, 교회 상회인 노회, 노회 상회는 총회가 있으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이다.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최종 판단자이다. 판단의 근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본 논문의 대상교회인 천안중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소속이었다.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의 청빙 결의와 노회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승인된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되지 않는 한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이 유지된다. 그러나 소속 노회가 불법적으로 면직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부인된다. 충남노회는 총회에 의해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되었다. 이 경우 노회 임원의 권한은 상실되어 모든 행정·사법권이 중지되며 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를 할 수 없다. 또한 제107회 총회(2023.9)에서 폐지되어 더 이상 총회 산하 노회로서 지위가 상실되었다. 이는 충남노회라는 이름으로 천안중부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권한 없는 자들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 담임목사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불신임을 가결한 것 역시 위법이다. 담임목사를 면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불신임을 결의한 것은 이율배반이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 (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민법), 현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사랑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개정위원이며, 칼빈대학교 겸임교수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법을 강의한 바 있다. 저서로 『합리적인 당회운영』, 『장로교 신학적 전통』, 『교회 정관법 총칙』, 『장로회 헌법 정치 해설』,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신비의계시 로마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외 다수가 있다.

1. 서론

‘대한예수교장로회’란 대한민국 안에 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에 의해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모든 교회 명칭 앞에 이를 붙인다.¹⁾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와 같은 명칭이다. 천안중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한 교회로 장로회 정치원리와 교리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한 교회이다. 이 정치는 침례교회의 회중정치나 감리교의 감독정치, 가톨릭교회의 교황정치가 아니라 장로회 정치를 표방한다. 장로회 정치란 성직권을 가진 목사와 교인들의 선택과 위임을 받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 지교회를 치리하며 관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즉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한다. 교인들의 주권과 치리권은 목사와 장로에게 위임하여 당회로 행사하게 하는 대의 정치이다.

장로회 정치는 1심인 당회와 2심인 노회, 3심인 총회로 하는 3심제 심급을 가지고 있다. 노회란 소속 지교회 목사인 ‘목사회원’과 지교회 세례교인에 비례에 의해 파송한 ‘장로총대’로 조직한다. 목사의 1심 관할은 노회이며, 교인(장로 포함)의 1심 관할은 당회(지교회)이다. 총회는 노회의 상회로 최고회이다.²⁾ 지교회 담임목사는 지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청빙 결의한 후 노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³⁾ 이 승인은 노회 주관으로 위

임식을 행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⁴⁾ 이는 조직교회를 의미하며, 지교회 치리장로가 없으므로 당회가 조직되지 않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를 ‘시무목사’라 한다.⁵⁾ 시무목사의 담임의 법적 효력 시점은 노회에서 청빙이 승인될 때이며 별도로 취임식은 없다.

담임목사의 임면권은 소속 노회에 있으며, 임명(청빙 승인)은 지교회 공동의회의 청빙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담임목사를 임명하지 못한다. 면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교회 공동의회 위임해약⁶⁾ 청원에 의해 노회의 승인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지교회 청원과 상관없이 목사의 1심 관할인 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직을 정직, 해제, 면직은 노회의 권한이다.⁷⁾ 지교회 공동의회는 담임목사에 관해 소속 노회에 청원하여 목사의 1심 관할인 노회로 하여금 처리토록 청원할 수는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

4) 제90회 총회 결의 : 평동노회장 최영식 씨가 질의한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 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참조.

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17장 제2조 참조.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강중노회장 노경옥 씨가 현의한 공동의회 결의 없는 위임목사 위임해약과 관련한 유권해석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102회 총회 결의). 이 총회 유권해석 결의는 지교회가 노회에 청원할 때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당회가 적법한 규칙에 따라 노회에 청원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2항). 담임목사 청빙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며(정치 제21장 제1조 제5항), 청빙(위임목사) 해약 역시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노회에 청원한다. 이때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당회 결의로 현 당회장(담임목사)이 위임하는 대리자가 의장이 된다(정치 제9장 제3조).

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참조.

1)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1912. 9.1. 결의, 회의록 참조. “교회 명칭 앞에 ‘조선예수교장로회’를 붙이기로 하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12장 제1조.

3)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으나 직접 처리할 수 없다. 이러한 권한은 지교회 권한이 아닌 소속 노회의 권한이다.⁸⁾

교회 내부적인 자치법규인 장로회 헌법과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이 지교회를 구속하지만,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 이상 대한민국 실정법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경우 관여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⁹⁾ 이러한 국가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악용하여 종교 내부인 지교회 치리 기관인 당회, 그 상회로 노회, 노회 상회로 총회의 치리회에서 행정과 권징의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교회의 담임목사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교회의 대표자의 지위도 가지면서 교회를 치리를 주관하며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권의 대표자로서 매우 중요하다.¹⁰⁾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 분쟁은 법률행

위의 대표자가 누구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본 논고는 천안중부교회와 소속이었던 충남노회와의 관계속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와 분쟁에 관해 법리적인 고찰을 하는데 있다. 과연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충남노회의 면직이 정당했는가?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는 적법했는가? 불신임의 근거가 되는 정관변경은 적법했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법리적으로 고찰하여 중국적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데 있다.

2. 충남노회와 천안중부교회 분쟁 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목사는 성직자로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직분이다. 목사가 되려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목사직의 가장 중요한 ‘강도권’을 부여받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후 1년간 총회 산하 지교회 당회에서 지도를 받은 후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는다. 강도사로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임직한다. 이렇게 하여 대학 졸업 후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받고 각종 고시와 인허로 목사로 임직한다.

이러한 목사직을 너무나도 쉽게, 불법적으로 목사직을 면직하여 목사직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면직처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엄격해야 한다. 특히 목사직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들이 면직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

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10장 제6조 3항 참조.

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1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¹¹⁾ 이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면직에 이르는 절차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당연 무효 사유가 된다.¹²⁾

1) 대상교회 소속인 충남노회의 분쟁¹³⁾

대상교회 분쟁은 소속인 충남노회 분쟁과 연동되어 있다. 충남노회는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내포 일원을 지역으로 하는 지역 노회이다. 충남노회는 제132회 정기회(2015.4.6)에서 이단화 목사를 노회장으로, 이상규 목사를 서기로 각 선출하고 폐회하였다. 이를 ‘정기회 측’이라 한다. 충남노회의 상급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상규 목사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직전 노회장(제131회) 임민순 목사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총회 지시에 따라 임민순 목사는 제132회 정기회의 속회(2015. 6. 5)하여 그 회의에서 노회장 임창혁 목사를, 서기 윤익세 목사를 각 선출하였다(속회 측).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회 이후 정기회 측과 속회 측으로 분리되어 정기회 회무를 진행하며 서로 자신들에게로 종전 충남노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이 둘로 분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노회로 존속한다. 문제는 어느 측이 정통성 있는 노회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정기회 측(노회장 이단화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은 2015.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이 법원’으로 표기함) 2015가합102135호로 충남노회에 대하여 제132회 속회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속회 측(노회장 임창혁 목사, 서기 윤익세 목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노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속회 측인 임창혁과 윤익세 목사는 이 법원 2016가합100167호로 정기회 측인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에 대하여는 각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6, 6. 3. 본소와 관련하여 ‘제132회 속회는 제132회 정기회에서 정상적으로 노회장으로 선출된 이단화가 아닌 전임 노회장 임민순에 의해 소집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결의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용하며, 반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항소하였으나 2017, 6, 22,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¹⁴⁾, 충남노회 속회 측인 임창혁, 윤익세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9. 24.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정기회 측 이상규 목사는 2017. 9. 5. 이 법원 2017가합102610호로 충남노회를 상대로 제132회 속회 이후의 속회 측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윤익세, 임창혁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노회

11) 교회가 담임목사를 지지파와 반대파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임목사 반대파는 노회와 연계하여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상실케 하기 위해 노회 정치권과 결탁하여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박탈하기 위해 담임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마녀사냥과 불법적인 면직처분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교단은 불법 면직처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1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합10249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현재 2심에서 계속 중이다.

14) 대전고등법원 2016나13220(본소), 2016나13237(반소). 이같은 대법원판결을 ‘제1관련 사건’이라 표기한다.

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21. 5. 21. '제133회, 제134회 속회측 결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유 등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제134회 속회측 결의로 선출된 임원이 소집한 제136회 속회측 결의 역시 무효이며, 연쇄적으로 제143회 속회측 결의까지 선행절차의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¹⁵⁾

속회 측이 무효이면 정기회 측은 적법한가? 이 법원은 “제134회 이후 정기회 측의 결의에도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¹⁶⁾ 특히 이 법원은 속회 측이 제136회 이후 정기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하였다. 기각 이유로 속회 측의 정기회, 임시회 등이 이상규 목사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정기회 측도 속회 측과 별반 다르지 않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고, 총회는 사실상 속회 측을 총남노회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 온 점, 정기회 측보다 속회 측 회원수가 더 많다는 점 등으로 설명했다. 속회 측인 윤익세, 임창혁 목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¹⁷⁾ 그러나 위 판결은 2021. 12. 10. 확정되었다.¹⁸⁾

15) 총남노회 제132회 속회 이후 제134회부터 제136회까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속회가 무효이며, 무효인 속회에서 선출한 노회장은 효력이 없으며, 효력 없는 노회장이 소집한 차기 노회 정기회는 무효라는 의미이다.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4면., 제132회 정기회 이후 노회 규칙과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임원선거가 아닌 자파(정기회 측) 회원들만의 정기회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다.

17) 대전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12665 판결

18) 이 확정판결을 “제2 관련 사건으로 표기함.

2) 총회의 총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 구성

총회는 2020. 9. 21.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 제24조 제3항으로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3) 총남노회 사고 노회 지정

총회는 2021. 9. 13. 열린 제105회기 제26차 임원회(총회장 소강석 목사)에서 총남노회 분쟁(사고) 노회로 처리하는 안을 가결하였고, 2021. 10. 21. 제106회기 제5차 임원회에서 분쟁(사고) 노회로 규정한 총남노회에 대하여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분쟁 노회 수습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사고노회로 지정될 경우, 노회 임원의 권한은 상실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기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 노회는 거부할 수 없고, 무지역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지역노회 또는 무지역노회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2020.9.21. 제정, 2021.9.13. 개정

4) 충남노회의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

(1) 천안중부교회의 시무장로 정광호 등은 목회활동비 횡령, 담임목사 직무유기, 당회기만 등을 이유로 충남노회에게 김종천 목사에 대한 위임해제 청원을 하였다.

(2) 위 청원에 따라 정기회 측이 선임한 노회장 고영국 등은 김종천 목사에 대한 청원을 처리할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채무자 재판국은 2022. 3. 7. ‘피고소인 김종천 씨에 대하여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위임목사로서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행정, 목회, 설교, 심방 등의 일체의 직무)’는 결정을 하였고, 2022. 3. 31. 김종천 목사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

3. 목사 면직판결의 적법성과 효력 여부

1) 면직처분에 대한 당사자들 주장

면직처분을 받은 김종천 목사는 충남노회가 총회의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분쟁 노회로 지정되어 모든 임원이 권한을 상실한바 이 사건 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재판국 구성 또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¹⁹⁾ 그러나 김종천 목사를 면직 처분했던 충남노회는 법원 판결 등에 대한 조치를 정한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그 제15조 제1항에서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 판결이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회는 제1 관련 사건 판결 확정²⁰⁾에 따라 정기회 측 임원들의 권한을 인정하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 10112, 결정문 5면 참조.

20)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46852 판결

여야 하는데도 위 조항을 위반하여 충남노회를 분쟁 노회로 지정하였다. 또한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은,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 정치부가,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분쟁 노회 판정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총회 임원회는 총회 개회일과 동일한 일자인 2021. 9. 13. 충남노회를 분쟁 노회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총회의 충남노회에 대한 분쟁 노회 지정 결정은 효력이 없고, 충남노회의 재판국 또한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판결은 적법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요약하면, 제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폐지의 법적 근거는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되어 분쟁 종식이 불가능할 경우, 「분쟁 매뉴얼」에 의해 총회는 충남노회를 폐지하는 결의를 했다. 여기서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되면 해당 노회인 충남노회 임원 권한은 상실되어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된 상태에서 임원의 권한이 상실된 상태에서 재판국을 조직하여 김종천 목사를 면직한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나 김종천 목사 면직을 처분했던 충남노회 측은 분쟁 노회로 지정과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충남노회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과 총회의 충남노회 폐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남노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은 소송의 승소자에 대한 문제이지 노회 승소자의 문제가 아니다. 소송의 승소자는 노회로부터 총대로 파송하여야 소송 승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후술 및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다248879 판결.

한 바와 같이 충남노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 노회 지정과 제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 폐지의 효력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은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2)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교회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한다.²¹⁾

충남노회의 면직처분은 김종천 목사에게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단순히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대한 다툼을 확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했던 충남노회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이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을 인용했다.²²⁾ 교리와 그 해석에 대

2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참조.

22)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지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대법원 2011. 10. 27.

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사건, 김종천 목사에게 대한 충남노회 면직처분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3) 면직 처분한 충남노회 적법성 여부

충남노회는 제107회 총회에서 폐지되었다. 폐지는 총회 결의이다. 그러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이 반복되지 않는 한 총회 결의를 무효,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결의에 의해 충남노회는 폐지, 혹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충남노회가 부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보자.

먼저 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고) 노회 매뉴얼을 근거로 제시한다.

- 1) (중략) 분쟁노회수습매뉴얼대로 충남노회 폐지를 청원하므로 충남노회를 폐지하기로 가결한다.
- 2) 충남노회 폐지 후속 처리는 모두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① 분쟁노회수습매뉴얼대로 할 시 해당 지역 노회가 1개 노회만 있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노회수습매뉴얼」 10항의 원칙을 잠재하고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 ②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 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

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총회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천안중부교회 비롯하여 과거 충남노회에 소속되었던 지교회들에 대하여 이적할 노회를 결정하라고 통지하였다. 그리고, 이후 총회 및 총회 임원회의 위임을 받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가 기존 노회의 행정업무를 대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노회는 종래의 존립 기반을 상실하여 그 조직과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²³⁾

그러나 충남노회(노회장 고영국)는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였다고 주장한다.²⁴⁾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은 대법원판결(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46852 판결 및 대법원(2020. 9. 24 선고 2018다248879 판결)로 충남노회가 소급하여 부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판결들은 충남노회 소속 목사 개인의 담임목사 등 지위에 관한 것으로 단체로서의 충남노회의 존립과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²⁵⁾

한편, 소위원회가 2023. 3. 2. “총회 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소위원회 결의내용은 충남노회의 부활 또는 신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합102492 판결문 7면.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합102492 판결문 8면.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합102492 판결문 8면.

해석했다. 근본적으로 이미 총남노회가 총회 결의로 폐지되어 소멸해버린 이상 총남노회가 원래부터 폐지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하여 부활할 수는 없고 총남노회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새롭게 노회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 노회 폐지나 신설 권한을 가진 주체는 총회이므로 새로 노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위원회 공문은 총회가 아니라 소위원회의 결의에 관한 통지문에 불과하다.²⁶⁾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총회 제107회 총회의 총남노회 폐지를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총남노회는 총회 결의에 의해 폐지되었다. 총남노회가 폐지되어 소멸해버린 이상 총남노회는 총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폐지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하여 부활할 수는 없다. 총남노회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새롭게 노회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 총남노회를 다시 신설한다고 하여 종전의 총남노회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 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결국 소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정기총회 결의로 폐지된 피고 노회가 새롭게 설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노회의 존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총남노회] 노회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²⁷⁾

4) 총남노회 면직판결의 효력 여부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합102492 판결문 8면.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합102492 판결문 9면.

총남노회 재판국이 김종천 목사에 대한 목사직 면직에 관해서 살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면직한 총남노회는 분쟁(사고) 노회에 지정되고 임원의 권한이 상실된 상태에서 노회를 회집하고 재판국을 했다. 노회 임원 권한이 상실되었으므로 노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권한 없는 자들이 노회를 소집하여 고소장을 노회에 상정하고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하는 결의와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재판국에서 김종천 목사의 면직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이 법원 재판부는 그 이유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총회는 「총회 규칙」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²⁸⁾

둘째, 총회 임원회는 2021. 9. 13. 총남노회를 분쟁 노회로 지정하고 2021. 10. 21. 총남노회에 대하여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총회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분쟁노회수습매뉴얼」은 분쟁노회로 판정된 노회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고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 노회의 행정처리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남노회의 기존 모든 임원은 늦어도 2021. 10.경에는 임원의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이후인 2022. 3. 31. 이루어진 이 사건 교회판결은 권한 없는 임원들이 조직한 재판국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총남노회가 이후 폐지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폐지되기 전에 한 이 사건 교회판결의 효력을 두고 여전히 원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50회 총회(2020. 9. 21)에서 신설, 「총회 규칙」 제24조 제3항.

고 김종천과 피고 교회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이 이익이 있다.²⁹⁾

5) 위임목사 지위 유지 여부

(1) 위임목사 지위 취득

김종천 목사는 2017년경 천안중부교회의 청빙 및 충남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하여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가졌다.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의 분쟁으로 인한 분리(2015년), 계속된 대립으로 총회 임원회의 분쟁(사고) 노회 지정(2021.9.13), 총회의 충남노회 폐지(2022. 9), 충남노회의 분쟁 노회 지정과 총회의 폐지 이전에 충남노회 모든 행위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이에 부인된다는 전제 아래 김종천 목사의 위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당회장 파송과 위임목사 지위 상실 여부

총회 수습위원회가 총회장과 수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천안중부교회에 김상현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는 공문을 보냈다.³⁰⁾ 이와 별도로 충남노회 명의로 이상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³¹⁾ 임시당회장 파송 주체가 두 곳인 총회 수습위원회와 충남노회이다.

충남노회(노회장 고영국) 측은 총회 헌법 정치편 제12장 제5조 제3항³²⁾을 근거로 하여 임시당

회장을 파송하였으므로 김종천 목사 위임목사 지위는 소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 위임목사직을 해제한 후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기에 위임목사 지위가 상실된다는 주장은 장로회 헌법을 오해했다. 이 부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총회 헌법 정치편은,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 임직하고(제15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해당 목사 또는 지교회의 원에 따라 소속 노회가 결정하며(제17장 제1, 2조),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된다고(제9장 제3조) 규정하고 있다.

위 총회 헌법 정치편 제12장 제5조 제3항의 추상적 규정이, 목사의 임직, 사면, 사직 등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총회 헌법의 구체적 규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김종천이 총회 헌법 및 피고 교회 정관의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 및 절차를 따라 면직되었음에 관한 주장 및 증거가 없는 이상, 임시당회장 파송 공문 발송 사실만으로 원고 김종천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직책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충남노회는 김종천 목사에 대하여 제2차로 목사직 면직을 처분했다(2023. 4. 22).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제107회 총회(2022. 9. 18)에서 충남노회가 폐지되었으므로 폐지된 충남노회에서 면직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6) 소결론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한다.”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합102492 판결문 9면.

30) 문서번호 본부 제107-301호(2023. 1. 20). 수신: 천안중부교회. 제목: 임시당회장 파송의 건.

31) 문서번호 충노 제230012호(2023. 3. 6) 충남노회가 폐기되었음에도 충남노회 공문을 발송했다.

32)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입하여 전 교회를 위하여 단정하게 하고, 인애와 성실과 덕을 권장하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충남노회 소속이었다. 목사의 임면권, 즉 1심 재판관할은 충남노회이다. 충남노회가 천안중부교회 담임인 김종천 목사를 면직처분하였으므로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종천 목사를 면직한 충남노회는 이미 총회 분쟁(사고) 노회매뉴얼 따라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권한이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충남노회 소집권은 노회장인바 노회장이 교단총회 내부적으로 그 권한이 상실되어 노회를 소집할 수 없다. 노회를 소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누가 노회를 소집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아 재판국을 조직하여 김종천 목사를 면직했다는 말인가? 이 권징재판 판결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효력이 있는 주장은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그 제15조 제1항에서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자는 승소판결이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라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제132회 속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속회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 총회 총대가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고, 승소했을 때 노회나 총대권이 회복된다는 규정이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단화, 이상규 목사가 총대권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충남노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대로 파송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총대권 제한이 아니라 회복된다는 규정일 뿐, 이러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규정이 총회 분쟁(사고) 노회 매뉴얼이나 제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의 폐지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분쟁(사고) 노회 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 노회장(정기회 측)을 비롯하여 임원들의 권한이 상실되었는데 이들이 충남노회를

소집하고 재판국을 조직하여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의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를 하여 권징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규정에 따른 범죄 행위이다.³³⁾

4. 공동의회 불신임 결의 효력 여부

1) 담임목사 불신임 효력 여부

전 충남노회(노회장 고영국)가 천안중부교회 담임(위임목사)인 김종천 목사를 권징재판으로 면직처분을 하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면직처분이었으므로 “면직판결 등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2492). 이 사건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 판사)가 변론 종결(2023. 5. 23)을 하고 판결선고를 예고(2023. 6. 27)하자, 피고인 충남노회 고영국 목사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2023. 6. 1). 이유는 피고인 충남노회의 지위에 관하여 추가 주장과 입증을 제출하겠다는 것이었다. 변론재개 신청을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 또는 참고사면에 “원고 김종천에 대한 2023. 6. 4.자 추가 불신임 결의에 관한 주장을 새로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로운 변론재개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즉 선하게 해석한다하더라도 피고인 충남노회는 변론종결 전에도 수시로 “임시당회장 파송, 해임결의, 면직 교회 판결[면직] 등 자체적으로 원고 김종천의 위임목사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각종 추가 조치들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

3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3조 범죄 :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여 왔던 만큼 변론종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목적의 조치를 취한 피고 교회가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이기를 “불신임 토대가 된 천안중부교회 정관개정 결의의 효력 여부가 다른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23779호로 항소심 진행 중)의 소송물로 재판 계속중이고 불신임 결의의 절차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불신임 결의 자체만의 구속력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로회 헌법 제17장 제2조³⁴⁾를 제시했다. 천안중부교회 공동의회(2023. 6. 4)에서 김종천 목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판단에 사실상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심리 및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론재개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판결(2023. 6. 27)이 있자 전 충남노회(노회장 고영국)는 신청인 4인이 김종천 목사 개인을 상대로 2023. 7. 24일 경에 담임목사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의 동일한 4인이 원고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했다.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원로목사를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이다. 이 신청 역시 김종천 목사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

2) 법령, 교회 정관의 소집권자 문제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민법의 법인 규정에 유추적용하며³⁵⁾ 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해 소집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된 경우, 이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³⁶⁾ 소집권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민법 제70조에 의해 법원의 허가에 의해 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천안중부교회에 적용된 교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장로회 헌법, 교단헌법으로 약칭)과 교회 정관이다. 이 두 교회법에 의하면 대상교회는 김종천 목사가 담임목사(대표자, 당회장, 위임목사)이다.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이다. 장로회 헌법과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당회 결의는 당회장인 김종천 목사에 의해 소집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당회원인 장로가 당회를 소집한 행위는 위법이다. 당회장(위임목사, 담임목사)이 당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공동의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상교회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공동의회 임원)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회장(본 노회목사 중)을 청할 것이요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제15조(당회장)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을

적용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3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참조.

3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7장 제2조 :

35)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

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위의 정관 제12조는 “당회장이 없는 경우”, 즉 당회장이 궐위시에 해당한 규정이다. 여기서 말한 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의미한다. 대상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직(당회장)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정관 제12조는 현재 해당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 대표자(임시회장)이다.

다음은 제15조로 이미 대표자(당회장, 담임목사)가 존재할 경우, 그 담임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당회장직을 대리하게 하는 위임규정이다. 이 규정이 유일하게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규정이다. 제15조에서 규정한 대리 당회장이란 특별한 사정으로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장을 대리할 목사 1인을 청하기로 결의하고 대리한 당회장을 특정하여 청하는 권한은 당회가 아닌 현재의 당회장이다.³⁷⁾ 그 이유는 현 당회장의 대리권 위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회장인 김종천 목사에게 의해 교회 정관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결의했는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공동의회 소집은 부정된다. 소집권자와 소집 절차가 하자이면, 결의내용은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

3) 공동의회 불신임 결의와 효력 여부

(1) 1주일(7일) 전 소집 위반

3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 제3조.

대상교회 2021. 11. 21.자 주일예배 주보에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라고 공지했다.³⁸⁾ 이러한 회의목적 공지 후 2021. 11. 28일 주일에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했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은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해야 하며”(교회 정관 제11조 ⑤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일 전에 공지하였으니 소집 절차의 하자이다. 공동의회에서 다른 결의가 아닌 정관변경 문제이다. 정관변경은 교회 존속과 설립목적에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6일전 공지가 무효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 교회의 뉴라이프교회 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의장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채무자 교회는 이 사건 교인총회 예정일인 2016.1.10. 보다 1주일 전인 2016 12.24:00까지는 이 사건 교인총회 공고를 마쳤어야 한다. 그런데 2016.1.3. 에 이르러야 이 사건 교인총회에 대한 이 사건 공고가 있었으므로 사건 교인총회 소집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이 사건 교인총회의 목적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인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11.7. 선고 94다 7669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4 24794 판결 취지 참조).³⁹⁾

종중원인 갑을 비롯한 10명의 종원이 1991.9.3.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1991.9. 8. 13:00경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갑

38) 천안중부교회 2021. 11. 21.자 주일예배 주보 참조.

3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0001 결정 참조.

을 종종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그 종종총회의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1조⁴⁰⁾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종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11.07. 선고 94다7669 판결).

대상교회가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주일(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소집하여 소집 절차에 하자로 결의 방법을 논할 이유 없이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 문제

대상교회 정관변경을 결의(2021. 11. 28)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현재 계속 중이다. 민법 제42조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대상교회에 적용된다.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상교회 정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공동의회

제13조(회의사항)

⑤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의 청빙은 투표 2/3 이상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권사 천거는 투표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40)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정관 변경 및 공고)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회에서 결의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과한 후 당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2021. 11. 28)하고 공동의회에서 43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259표, 반대 167표, 기권 7표로, 총투표수의 과반수가 넘는 59.81%가 정관개정안에 찬성하여 결의했다고 주장한다. 이 결의에 의하면 대상교회 정관 규정의 의결 방법에 하자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대상교회 정관은 제37조 정관변경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는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일반 의결은 과반수”라고 했다. 이 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열거된 성문 규정은 ‘과반수’이다. 이 규정은 총의결권자 과반수로 해석해야 한다.

일반결의 정족수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단탈퇴 규정에 적용한다.⁴¹⁾ 정관변경은 교단탈퇴 규정에 적용한다. 교단탈퇴와 가입에 관한 규정인 “출석위원 2/3 이상”(정관 제13조 ⑥항)의 요건에도 이르지 못한다. 결국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방법, 의결정족수에 하자로 정관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정관변경은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이 정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정관 제40조(재신임 투표)⁴²⁾ 해석

4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2) 제40조(재신임투표) : 위임목사(담임목사)는 위임 후 매 6년마다 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고, 그 의결은 투표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단, 교회에 중대상황이 발생하여 교회가 환영하지 아니할 경우는 재신임 여부를 즉시 물을 수 있다(조문 신설).

가사 대상교회 공동의회(2021. 11. 28)에서 백 번 양보해서 적법하게 정관이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규정으로 담임목사의 지위를 박탈 내지 상실케 할 수 없다. 이 개정된 정관으로 공동의회를 개최(2023. 6. 4)하여 교회 정관 제40조에 의해 김종천 목사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다고 주장한다. 불신임을 결의했다고 하여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⁴³⁾

첫째,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했는가?

불신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공동의회 소집은 1주일 전에 공지했는가?

전술한 대로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2021. 11. 28)에서와 같이 법령(민법 제71조)와 교회 정관(대상교회 정관 제11조 ⑤항)에 1주일(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소집하여 소집절차에 하자이다.

셋째, 불신임 결의가 곧 담임목사 지위 박탈인가?

6년에 1차씩 신임투표를 통해 불신임이 결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상교회 정관상⁴⁴⁾ 담임목사 불신임 결의 후 후행적 처리 규정이 없다. 공동의회

불신임 처리가 되었다면, 장로회 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회의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을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⁴⁵⁾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불신임 결의가 담임목사직 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⁴⁶⁾, 해임은 공동의회 결의사항이 아닌 노회의 고유권한이다.⁴⁷⁾ 대상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통해 위임목사직을 해약하고자 할 때 장로회 헌법 정치 제17장 제2조의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위임목사 해약 청원권은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사항이지만, 해임(해

4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46)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합54408 결정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되면서 “시무 개시 후 매 7년마다 당회 신임을 받아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목사의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의 임기가 2018. 4. 30. 자로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신임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임목사직이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신임투표 약정의 내용은 “시무 매 7년마다 신임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기가 7년으로 당연히 만료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임투표 약정의 내용은 ‘시무 매 7년마다 당회 결정 방법에 따른 신임투표를 통하여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어서 신임투표를 한다는 내용이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달리 “당시 임기를 7년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라고 했다.

4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 3.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담전 4:14, 행 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2~5).

43) 충남노회는 김종천 목사를 2차(2022. 3. 31., 2023. 4. 22)에 걸쳐 면직했다고 주장하면서 면직을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신임 결의로 박탈했다.

44) 제40조(재심임투표) : 위임목사(담임목사)는 위임 후 매 6년마다 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고, 그 의결은 투표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단, 교회에 중대 상황이 발생하여 교회가 환영하지 아니할 경우는 재신임 여부를 즉시 물을 수 있다(조문 신설).

약) 결의는 노회 권한이다. 그러나 대상교회는 소속노회인 충남노회가 폐지(2023. 9.) 되었으므로 해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 공동의회에서 불신임 결의 자체가 소집권자, 소집절차 하자로 무효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가사 적법하다 하더라도 불신임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로 위임목사 해임(해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하면 공동의회(교인총회)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한 교단 헌법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장관에 목사해임 규정이 없으면 오직 교단 헌법에 규정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장관에 해임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의회가 담임목사를 해임을 금지한 교단 헌법이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는 갑 교회 소속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목사의 해임을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함께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점, 갑 교회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하여 교단 헌법 및 헌법 시행 규정을 자기규범으로 받아들인 점 등 재판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⁴⁸⁾

교인들이 교단 헌법에 따라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여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이다.

5. 결론

사탄은 담임목사만 파괴하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장난질을 한다. 교회 구성들 간 서로의 침해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할 때 교회 대표자를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힘쓴다. 현재 담임목사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가 아닐 경우, 담임목사 승인권과 박탈권을 가진 소속 노회와 결탁하여 마녀사냥으로 목사직을 박탈하여 해당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직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임시당회장(임시 대표자)과 담임목사를 세우려는(청빙) 시도가 본 교단(예장합동)에서 일어난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필자가 지난 20년 동안 ‘교회법’을 연구하며, 본 교단(합동) 중심의 인터넷 언론(리폼드뉴스)을 운영하면서 약 70-80% 이상이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대표직 분쟁이었다.⁴⁹⁾ 본 교단의 치열한 분쟁이 있었던 사랑의교회, 제자교회, 광주중앙교회, 울산남교회, 헤린교회 등 모두 담임목사직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취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수많은 교회의 분쟁은 결국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대한 분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천안중부교회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분쟁은 이미 20년 동안 교회 분쟁 사례와 대법원, 그리고 전국의 하급심에서 이러한 문제는 법리적인

참조.

49) 소재열, 『분쟁현장 보고서』(브엘북스, 2018)

48)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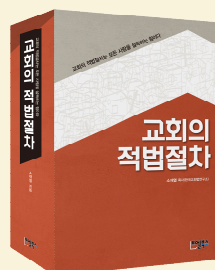
로 확충되어 어려운 점은 없다. 전형적으로 담임 목사가 스스로 자유사임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의 1심 재판관할인 노회가 목사직을 면직하여 대표직을 박탈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담임목사를 세워 법률적인 대응을 한다.

대상교회인 천안중부교회 역시 담임목사인 김종천 목사는 소속 충남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에서 박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충남노회가 김종천 목사를 면직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남노회의 김종천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효력이 부인된다. 그러나 면직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로 착각하여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할 수 없는 총회 수습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이어 소속 노회인 충남노회가 총회에 의해 천안중부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행정권이 중지되었음에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이렇게 대성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교회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대표자의 문제는 곧바로 대상교회의 교회결의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교인총회) 소집권자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집합체에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자가 소집하여 결의하였을 때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상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권한 없는 임시당회장이 스스로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종교 내부적으로, 혹은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제 총회가 충남노회를 폐지하여 소속 노회로부터 담임목사를 면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구성원들은 이제 교회 정관을 개정하여

담임목사를 불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해임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결의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정족수 규정은 없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은 공동의회 일반결의는 “과반수 찬성”이라는 규정을 “출석회원 과반수”로 잘못 해석하여 정관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정관의 열거된 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가 아닌 그냥 “과반수”로 되어 있다. 이는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 의결권자 과반수로 해석해야 한다. 교회 분쟁에서 법원은 열거된 성문 규정대로 해석하여 판단한다. 정관변경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담임목사 불신임을 결의했다. 이는 이전 담임목사 면직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담임목사 불신임을 결의한 공동의회 소집을 총회에 의해 폐지된 충남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한 공동의회는 하자가 있으며, 이 공동의회에서 불신임은 인정될 수 없다. 현재의 담임목사를 불법적으로 면직해 놓고 그 면직이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불신임 결의를 통해 대표직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너진다. 또 대상교회 원로 목사를 임시 대표자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또한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절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훈을 준 사건이다. (*)



소재열 박사 지음

브엘복스 펴냄

신국판 양장, 1,300면

정가 60,000원

변화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막 9:1-8절을 중심으로-

김순정 목사 (말씀사역원 본부장, 새사랑교회)

목 차

- | | |
|------------------------|--------------------------|
| 1. 서론 | 3) 변화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2-8절) |
| 2. 변화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1) 예수님의 변화 사건(2-3절) |
| 1) 마가복음 9장의 구조 | (2)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4-6절) |
| 2) 하나님 나라의 도래(1절) | (3) 구름 속의 음성(7-8절) |
| (1) 신적 권위의 말씀 | 3. 결론 |
| (2) 아멘 | |
| (3) 하나님 나라의 도래 | |

<요약>

마가복음 9:1-8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2-3), 둘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4-6), 셋째는 구름 속의 음성(7-8)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한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옷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결정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자들이나 변화산이나 구름이나 흰옷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본문이 담고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김순정 목사 / 한국성서대학교(신학, B.A),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수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M.Div.),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조직신학, Th.M.), 현재 새사랑교회, 리폼드뉴스, 말씀사역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읽기」(브엘북스, 2019), 「구속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브엘북스, 2023) 등이 있다.

1. 서론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 변화산이 어디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성경은 변화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변화산의 위치가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변화산의 위치보다는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가복음은 1:1에서 마가복음의 전체 핵심을 이미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에 대해 계시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복음’(τοῦ εὐαγγελίο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θεοῦ)이다.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있다.

소재열 박사는 마가복음의 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족보나 예수의 출생 사건을 취급하지 않고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기록자 마가는 이 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이 이 복음서의 의미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⁵⁰⁾

칼빈(J. Calvin)은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마가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소개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마가가 선지자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본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⁵¹⁾

성경학자인 칼빈은 이처럼 마가복음이 사람들이나 사건을 위한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악과 죽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창 3:15).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약속하신바 대로 하나님은 구속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 수많은 시간, 사건, 인물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본문을 읽을 때 단지 예수님의 3인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한 교훈집으로 혹은 이

50) 소재열, 「구속사 관점에서 본 신구약성경 맥 찾기」(안양: 갈릴리, 2003), 372.

51) John Calvin, *Commentary on Matthew, Mark, Luke, Volume 1* (Baker Books, 1974), Mark 1:1.

들에 대한 위인전식 접근을 할 것이 아니다. 또 변화산의 위치를 찾는 고고학적 접근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은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관점에서 변화산 사건(막 9:1-8)을 이해하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변화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 마가복음 9장의 구조

마가복음 9장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A.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1-8)
- B. 변화산 사건을 비밀로 하라 당부하신 예수 그리스도(9-13)
- C. 귀신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14-29)
- D. 부활에 대해 교훈하신 예수 그리스도(30-32)
- E. 섬기는 자에 대해 교훈하신 예수 그리스도(33-37)
- F. 요한의 질문에 대해 교훈하신 예수 그리스도(38-50)

2) 하나님 나라의 도래(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1) 신적 권위의 말씀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이르신다. 여기 그들은 8:34절의 “무리와 제자들”을 말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먹을 것을 제공받기 위해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하신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λέγω ὑμῖν)는 신적 권위의 표현 방식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에 선포하시는 방식이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위대한 선지자, 랍비, 스승들의 이름에 권위를 두고 그들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로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자존자이시다. 그분보다 더 높고 위대한 분이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의 이름에 권위를 두고 선포하신다(출 3:14).

예레미야 7: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선포하신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렘 7:13a)

이런 방식은 창조 당시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눠라 하시고.”(창 1:6)

이런 표현은 창 1:9, 11, 14, 20, 22, 24, 26, 28, 29에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나타난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가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사 48:22)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에 권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권위를 두고 직접 선언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선포 방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다.

(2) 아멘(αμην)

또 한 가지는 “진실로”라는 단어이다. 우리 성경에 ‘진실로’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아멘(αμην)으로 되어 있다. 이 단어는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확실히’라는 의미를 가진다.⁵²⁾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사전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신 이가 이르시되.”(계 3:14)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라오디게아교회에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다. ‘아멘’ (ὁ ἀμην), ‘충성되고 참된 증인’ (ὁ μάρτυς ὁ πιστὸς καὶ ἀληθινός),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ἡ ἀρχὴ τῆς κτίσεως τοῦ θεοῦ)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아멘은 단순하게 불변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3) 하나님 나라의 도래

J. P. 랑게(John Peter Lange)는 “마가는 다른 두 복음서 기자보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능력(위엄)으로 오시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누가는 그분의 왕국에 대해 말하고, 마태는 그분이 그 왕국에 나타나신 것에 대해 말한다.”라고 했다.⁵³⁾ 공관복음서를 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마주 대하는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이다. 마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준다. 그리고 눅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된다. 이 족보들은 따분하고 읽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 족보 자체에 아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다만 1절에서부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랑게(Lange)가 말한대로 능력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52) Gerhard Kittel, & G. Friedrich(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TDNT)*, 10 Vol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WM. B, 2004), I. 335.

53) John Peter Lang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an Exegetical and Doctrinal Commentary* (Wipf and Stock, 2007), 1:1.

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분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강력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룩하실 분이 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하고 마가복음이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위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핵심이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는 변화산 사건, 그리고 멀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합적이고 점진적으로 지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또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완성하실 구속의 역사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실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7-20)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 유대교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가 구속주이시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이다(요 14:6).

소재열 박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현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눅 17:20-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한다. 게르할더스 보스(G. Vos)는 여기서 “너희 안에”(εντος υμων)라는 말은 ‘너희 안에’(in you)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among you)라고 해석하고 있다. 문자적 의미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둘러쌓여 있는 무리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 설명하신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천국의 현재성을 계시해 주고 있다.”⁵⁴⁾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1절이 말하는 하나님

54) 소재열, 『하나님의 자기계시』 (서울: 한국개혁신학연구원, 1993), 198.

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3) 변화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2-8절)

(1) 예수님의 변화 사건(2-3절)

²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³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후 6일이 지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변화산의 정체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핵심은 산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μετεμορφώθη ἔμπροσθεν αὐτῶν)는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μετεμορφώθη)로 되어 있다.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이다.⁵⁵⁾ 즉 제자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신 것이다.

신약학자 크레이그 에반스(Craig A. Evans)는 변형되었다는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는 변형되었다. 장차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수의 확신에 찬 예고 직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아버지의 영광(8:38) 중에서 예수의 왕적 지위를 잠깐 보여준 사건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복음서 기자는 변화산 사건의 영광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⁵⁶⁾

55) Gerhard Kittel, & G. Friedrich(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DNT)*, IV. 755.

이 예수님의 변형은 부활 후의 모습 즉 재림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다. 그리고 하늘에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신다. 변화산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인 왕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즉 왕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이다.”(요 17:2)

또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 즉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롬 15:12)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최후의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56) 크레이그 A. 에반스, 「마가복음 하」, WBC, 김철역 (서울: 솔로몬, 2001), 161.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 17:14)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3)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나며”(στίλβοντα)는 현재분사이다.⁵⁷⁾ 계속해서 빛이 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다. 그런데 이 광경은 구약시대에도 등장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
셨나이다 2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시 104:1-2)

시 104편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분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그분은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 같이 치셨다고 묘사한다. 빛나는 옷을 입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욥 11:10처럼 옷을 입으셨다. 이것은 창조된 우주에 반사되는 왕의 영광과 위엄 있는 영광이다.⁵⁸⁾

칼빈은 시 104:1-2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57) *Novum Testamentum Graece(Nestle-Aland 28 Edition)*,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2012), Mark 9:3.

58) John Peter Lange, *Commentary on Holy Scriptures Psalms*, 104:1-2.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의 광채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실 때, 이것은 당신 안에 숨어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옷이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무한한 높이에 이르려고 하면 비록 구름 위로 날지라도 그 도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의 위엄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확실히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누리려면 그분이 옷을 입고 나타나셔야 한다.”⁵⁹⁾

하나님은 빛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방식은 옷이라는 방식을 통해 계시하신다. 그분의 위엄과 거룩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옷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또한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등장한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
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요.”(단 7:9)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환상 중에 왕좌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59)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ible, Psalms Part IV*, 104:1-2.

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은 천천, 만만이라고 했다. 그분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펼쳐 있었다. 바로 심판주 하나님을 묘사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의 환상 중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uchanan Ferguson)은 이 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9-10절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다. 이전의 장면들과는 대조적으로 질서와 평정, 그리고 절대적 주권이 두드러진다....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이 세상의 왕국은 덧없다.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그분의 모습은 타오르는 빛과 완전한 흰색의 이미지로 전달된다.”⁶⁰⁾

세상의 왕국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왕위는 영원하다. 그래서 타오르는 빛과 완전한 흰색의 이미지로 그분을 묘사한 것이다.

구약학자인 카일(Keil)은 다음과 같이 단 7:9-10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한다.

“다니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노인이나 백발의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의 위엄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 자신을 드러냈다(참조, 겔 1:26).... 하나님은 옛 신이라고 불리지 않고 단지 늙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이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위엄의 인상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인상은 그분이 입으신 옷과 그분의 머

리털의 모습과 그분의 보좌에서 나오는 불꽃으로 더욱 고조된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처럼 희다(참조, 요한계시록 1:14). 둘 다 흠 없는 순결과 거룩함의 상징이다.”⁶¹⁾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존경받으실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의 백성에게 존경받으실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는 것은 천사들과 하늘의 존재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다.⁶²⁾ 그렇다면 옷이 희게 변하고 밝은 빛이 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자명하다.

(2)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4-6절)

마가는 계속해서 4-6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⁵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⁶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61) Karl Fredreich Keil and Franz Delitzsch, *Danie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7:9-10.

62) 알란 콜, 「마가복음」, NBC, 1328.

60) 싱클레어 퍼거슨, 「다니엘」, NBC, 1041.

이에(καί,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 ‘더불어 말하거늘’(αλληλαλουντες)은 현재분사이다.⁶³⁾ ‘계속해서 말하거늘’이라는 뜻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 여기 ‘나타나다’는 말은 단순히 주관적이거나 정신적 나타남이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현현(manifestation)을 가리키는 것이다.⁶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소망을 대면하는 사람들이다.⁶⁵⁾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이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서인 모세5경을 기록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알란 콜(R. A. Cole)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자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여기 나타난 것에 대해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언한다. 물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모세는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했고(요 1:45; 눅 24:27),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엘리야를 말라기 3:1; 4:5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보았다(막 9:11).”⁶⁶⁾

63) *Novum Testamentum Graece(Nestle-Aland 28 Edition)*, Mark 9:4.

64) W.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17.

65) 알란 콜, 「마가복음」, NBC, 1328.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영똥한 소리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한다.

크레이그 에반스(Craig A. Evans)는 베드로의 이 말을 구약의 초막절과 연결지어 해석한다.

“베드로는 최초의 출애굽 때 일어난 큰 사건들 중 일부가 재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했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작은 초막에 거주하는 초막절을 지켰다(레 23:42-44; 느 8:14-17).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절기가 이스라엘이 구원 받은 영광스러운 그날을 대망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⁶⁷⁾

신약학자인 알란 콜(R. A. Cole) 역시 “초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시내산에 이렇게 임하셨으며 초막에서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한다.⁶⁸⁾

신약학자인 도날드 헤그너(D. A. Hagner)는 초막 셋을 각각 예수, 모세, 엘리야를 위한 것으로 짓자는 제안은 이 순간을 영원히 지속시키자는 기가 막힌 발상이었다고 주장한다.⁶⁹⁾ 베드로는 아마도 당장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66) R. A. Cole, *Mark,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172.

67) 크레이그 A. 에반스, 「마가복음 하」, WBC, 164.

68) 알란 콜, 「마가복음」, NBC, 1328.

69) Donald A. Hagner, *Matthew II, Word Biblical Commentary*, 493.

해방할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구약의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주신 절기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해방, 자유를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절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초막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는 아니었다(골 2:16-17).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한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를 만났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자였다. 그 나라는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빚지고 있었다. 엘리야는 최초의 선지자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사람들은 항상 그를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한 선지자로 여겼다. 이 두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가장 위대한 율법 수여자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에게 “계속 가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꿈꾸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역사가 그에게서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을 그에게서 보았다는 뜻이다. 마치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역사가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신 것 같다.”⁷⁰⁾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이다. 아합은 BC 850년 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다. 그렇다면 베드로 시대에서 약 850년 전에 살던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다. 또 모세는 BC 1400년대 살던 사람이다. 베드로 시대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둘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위대한 선지자들이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규율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5절에 “몹시 무서워하므로”(εκφοβοι)라는 형용사는 ‘공포에 질려서’라는 뜻이다.⁷¹⁾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400년 전에 살던 모세가 나타나고, 850년 전에 살던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3) 구름 속의 음성(7-8절)

⁷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⁸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던라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우리가 변화산 그림을 보면 온통 구름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구름이 어떤 형태의 구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중요하다. 신약학자 윌리엄 바

70) 윌리엄 바클레이, 「마가복음」, The New Daily Study Bible, 9:2-8.

71)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revised and edited by F. William Dank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εκφοβοι*.

클레이(W. Barclay)는 구름이 덮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대교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관련되어 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구름 속이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오신 것은 구름 가운데서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을 뒤덮은 것은 바로 구름이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다(출 16:10; 19:9; 33:9; 왕상 8:10). 구름의 강림은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방식이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것이다.”⁷²⁾

구름은 시내산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⁷³⁾ 출 16:10에 보면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속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다. 카일(Keil)은 출 16:10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오며”(출 16:9), 천막에서 나와 구름이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광야로 향하여”(출 16:10), 즉 그들의 얼굴은 신(Sin)의 사막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즉 구름 속에서 빛이 터져 나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특별한 표징은 광야에서 나타났다는데, 부분적으로는 원망하는 민족이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불모의 땅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⁷⁴⁾

72) 윌리엄 바클레이, 「마가복음」, The New Daily Study Bible, 9:2-8.

73) 알란 쿨, 「마가복음」, NBC, 1328.

카일의 주장대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매개체였다. 구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보다는 구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표징이었다.

또한 구약성경 출애굽기 19:9에 이렇게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백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출 19:9)

랑게(Lange)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백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백성은 들을 것이다. 백성들이 듣는 우레와 나팔소리는 모세가 듣고 있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 그 백성은 영원히 그를 믿을 것이다. 모세를 영구히 믿는 것은 곧 계시와 율법의 권위를 영원히 믿는 것이다. 다음에 오는 것은 중재적으로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보여 준다.”⁷⁵⁾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과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모세를 믿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이해했고 누구나 백성들의 선출이나 동의로 지도자가 될 수 있

74) Karl Fredreich Keil and Franz Delitzsch, *Exodus,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6:9-10

75) John Peter Lange, *Commentary on Holy Scriptures Exodus*, 19:9.

다고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달랐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명하신 자를 지도자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계시와 율법을 주셨다. 그를 중재자로 세우신 것이다.

구약학자인 테스몬드 알렉산더(T. Desmond Alexander)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천둥과 번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셋째 날 산 위를 덮은 구름과 산으로부터 발하는 천둥과 번개가 극적으로 출현했다.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연기가 산으로부터 올라왔다. 또 다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등장은 또한 점점 더 커지는 긴 나팔 소리를 통해서도 알려진다.”⁷⁶⁾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이 듣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고 지도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데 있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도 동일하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ἐστὶν ὁ υἱὸς μου ὁ ἀγαπητός)라고 한다.⁷⁷⁾ 원문은 ‘이는(혹은 그는)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리자임을 설득력 있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에나 수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후에나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천명하신 것이다.⁷⁸⁾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탄생부터 사역 전체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즉 3위 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다.

신약학자인 알란 콜(A. Cole)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시 한 번 더 세례받을 때와 같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아들을 증거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아가페토스) 아들이란 여기에서 “유일하게 태어난”(독생하신)이란 암시를 갖고 있으며, 히브리어 ‘야히드’(독자, 獨子)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⁷⁹⁾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절정에 달한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 쓰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알란 콜의 주장대로 독생하신 아들 즉 독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구약 히브리어의 독생자, 독자를 나타내는 야히드(יחידי)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

76) 테스몬드 알렉산더, 「출애굽기」, NBC, 158.

77) *Novum Testamentum Graece(Nestle-Aland 28 Edition)*, Mark 9:7.

78) 크레이그 A. 에반스, 「마가복음 하」, WBC, 166-167.

79) R. A. Cole, *Mark,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174.

는 것이다(창 22:2, 12, 16; 렘 6:26; 암 8:10; 슥 12:10).

구원의 역사는 성부만, 혹은 성자만, 혹은 성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 시대론주의자와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구약에는 성부가, 신약에는 성자가, 교회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 모든 섭리는 3위 하나님께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다. 그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신들만 있었다(8). 그렇다면 자신들 앞에서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결론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또 약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인간 예수가 아니다. 그 예수님은 창 3:15 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장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왕이시다.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12-202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일시 : 2023. 9. 18-22 대전 새로남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Arise, Churches!


교회여 일어나라!

제108회 주제 : 교회여 일어나라!

제 108회 총회준비위원장 정영교 목사

금년 제108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에 창립된지 111주년이 되는 해이며 제112회 총회여야 한다. 그런데 4회를 열지 못했으니 금년은 제108회 총회가 된다. 100년 넘도록 총회를 지켜부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특수한 지역교회로 세워지지만, 보편교회에 속한다. 교회는 사도적 선포에 근거해서 세워지고 유지된다.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공교회는 모두가 하나이며, 거룩함과 보편성, 사도성을 내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용서함을 받아 그에게 연합된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선포와 은혜로 자라가야 하며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개최될 대전 새로남교회

조직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이다. 교회는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상업이나 산업을 위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훌륭한 학교나 대학교를 세울 수도 있으며 하늘을 찌를듯한 수많은 마천루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하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보잘 것 없는 한 교회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주위에는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만족도 얻을 수 없는 주린 심령들이 참으로 많다. 이러한 영혼들을 진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어나야 한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은 교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살아있는 교회이다. 열음 창고 속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는 없다. 차갑고 죽은 교회에서는 결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생명력에 넘쳐있는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가르침이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일어나야 한다.

웃음과 즐거운 소리가 흘러나오는 진실한 공동체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들보다도 최우선이 되는 교회로 일어나야 한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꿈꾸는 교회로 일어나야 한다.(*)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개정 필요성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있다.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반한 규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장로회 헌법을 구속하지 못한다. 장로회 헌법은 전국교회와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를 구속한다. 총회라 할지라도 이 헌법에 반한 결의는 효력이 부인되며 무효 사유가 된다.

장로회 헌법을 무력화시킨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제108회 총회에서 폐지 내지 완전 개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108회 총회에 현의되었다.

무모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규장을 보자.

제15조(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그 자는 승소확정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여기 노회 총대란 '장로 총대'를 의미하고, 총회 총대는 목사와 장로 총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로 총대는 지교회 당회가 파송하지 아니하면 장로 총대가 될 수 없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장로가 승소하면 당회 파송 없이 총대로 회복된다는 본 규정은 장로회 헌법(교단 헌법)을 파괴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총회 총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받기까지 적어도 2~3년 이상 소요된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만 5년이 소요되었다. 총회 총대는 노회에서 파송하고 천서검사사위원

회를 통해 총회 총대가 된다.

노회에서 파송을 받지 않았음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총대가 회복된다는 것은 교단 헌법과 총회 규칙에 반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치리회 소송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취소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소나 재심밖에 없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날로부터 치리회 재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이런 무모한 세칙이 어디 있는가? 장로회 헌법을 파괴하지는 것인가?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한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러한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징권을 행사한 치리회의 징계(시벌)에 대해 법원에서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치리회의 권징권을 해벌하라는 규정은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 규정에 반한다.

권징조례 해벌은 재판절차의 하자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의 회개로 제한하고 있다. 장로회 헌법의 해벌 개념을 법원 소송 승소로 무력화 시켜버린 이런 세칙을 규칙으로 내놓았는가?

소송 승소의 조건으로 권징조례에 의해 해벌을

치리회 본회에 상정 내지 청원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해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세칙이 가능한가? 그것도 3주간 안에 진행하라는 말은 총회도 3주간 안에 소집하여 해별하라는 말인가?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반한다. 헌법에 위배된 총회 결의로 제정한 시행세칙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주장은 법인식에 문제가 있다.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으니 소송의 결과 판결문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된다. 이때의 자신의 권리는 장로회 헌법이 아닌 법원 판결로 행사할 뿐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내세워 법원 판결로 본 교단 치리회와 권징조례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제108회 총회에서 이를 폐지하든지 전면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쇄와 노회 신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12년 7개 노회로 조직하여 시작하였다. 총회가 조직된 이래 총회가 직권으로 소속 노회를 폐지한 사례는 제107회 총회가 최초로서 이례적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교회들에게 소속 노회가 없어져 버렸다. 소위 무노회 소속이 되고 말았다. 소속 노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지교회의 관리·감독할 노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교회 담임목사를 파송할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노회는 해방둥이 노회이다. 조국 광복과 더

불어 제32회 총회(1946년) 창립된 충남노회는 제107회 총회에서 폐지되어 77년의 전통적인 노회가 사라졌다. 이제 통합 측과 기장 측에만 존재하는 충남노회가 돼 버렸다. 총회가 직권으로 노회를 분립, 합병, 폐지할 수 있는가? 지교회 청원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교회를 폐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남긴 채 총회가 직권으로 충남노회를 폐지해 버리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런 사례가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일인가?

소속 노회가 없어져 버린 각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제107회 총회 결의에 따라 새로운 노회인 가칭 충남제일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이 가칭 충남제일노회는 총회와는 무관하지만, 여전히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 노회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소속 교회는 폐지된 충남노회나 가사 다시 충남노회를 복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충남노회와 법리적으로 무관하다. 지교회의 소속 노회 가입과 탈퇴는 지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총회가 지교회 소속을 지교회와 무관하게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 이를 비법인 사단으로서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근거한 법리라고 한다. 총회 임원회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소속 지교회를 강제적으로 타 노회로 이적케 할 수 없다.

또한 충남노회를 복원 내지 신설하여 그 노회 소속으로 결의할 수 없다. 지교회 노회 소속문제는 총회 권한이 아닌 지교회 교인들의 배타적 고유 권한이다. 이 점을 현 총회 임원회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107회 총회에서 분쟁노회 매뉴얼보다 사회소송 시행세칙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 폐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정인이 위법이라고 해서 제107회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사회소송 시행세칙은 개인의 소송에 대한 문제이지 노회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충남노회 문제는 사회소송 시행세칙에 적용하는데 규정 불비이다. 이런 이유로 법원 판례나 결정에서 사회소송 시행세칙이 제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 폐지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충남노회 사건은 제132회(2015. 4. 6) 정기회를 마치고 이에 불복하여 속회하므로 문제가 불거져 대법원에서 속회가 위법이라는 2020년 9월 24일 대법원판결이 있기까지 분쟁이 이어졌다. 필자는 충남노회 제132회(2015) 정기회 때부터 현장 취재를 했다. 충남노회는 법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해서 분쟁이 심화하였다.

이제 제107회 총회 결의에 따라 충남노회 폐지에 따른 노회를 신설해 주어야 한다. 21 당회 이상일 경우, 다른 절차가 필요없다. 제107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략) 분쟁노회수습매뉴얼대로 충남노회 폐지를 청원하므로 충남노회를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 2) 충남노회 폐지 후속 처리는 모두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① 분쟁노회수습매뉴얼대로 할 시 해당 지역 노회가 1개 노회만 있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노회수습매뉴얼」 10항의 원칙을 잠재하고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 ②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 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

이 결의에 의하면 “충남노회 폐지”, “지교회는 인근 노회로 가입시 허락한다.”, “지교회 21 당회의 신설 노회 요청시 허락한다”라는 세 가지 결의를 했다. 충남노회가 폐지되어 총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근 노회로 가입시 허락했다(예, 삼광교회), 이제 남은 것은 21 당회가 신설노회가 청원할 때 이를 허락해 줄 일만 남았다.

(가칭) 충남제일노회를 신설해 달하는 21 당회 청원인 대표 윤해근 목사는 2023. 8. 16.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총회 결의에 따른 신설노회 설립이나 이적이 아니라 이미 107회 총회에서 폐지된 충남노회를 복원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총회에서 폐지된 충남노회를 복원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저희는 제107회 총회 결의에 따라 신설노회인 (가칭)충남제일노회가 설립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으며, 소위원회에 (가칭)충남제일노회 설립 청원 교회의 모든 파일을 소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실사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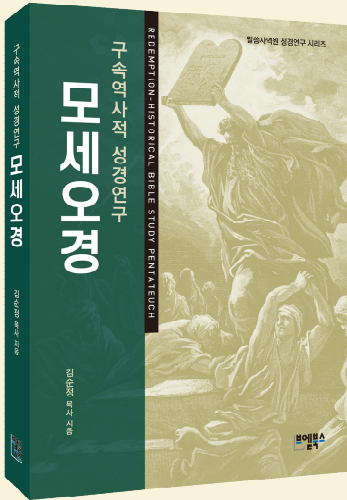
끝으로 “(가칭)충남제일노회 설립시 총회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본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반듯한 노회로 세워갈 것을 약속드리며 더 나아가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저희 26당회, 53개 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설노회가 설립되어 교회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구와 함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 서평

구속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

김순정 목사 지음 / 브엘북스 펴
 신국판 352쪽 / 정가 18,000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이같은 질문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체성이 결정된다. 또한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결정된다. 설교자는 목회 인생을 걸고 성경과 씨름한다. 설교는 설교자의 성경 이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설교는 성경 이해의 결과적 산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또한 설교자의 설교 원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천 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이로 인해 공회는 교리를 체계화하여 확정하였으며, 이를 계승해 왔다. 지난 세기는 물론 오늘날 역시 성경 이해와 해석에 관한 문제는 계

시 이해의 점진적 발전과 더불어 많은 연구 논문들과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를 위해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는 구호를 두고 말씀사역원의 본부장이며, 리폼드뉴스에서 구속 역사적 설교와 관련 논문을 발표해 온 김순정 목사가 이번에 『모세율법』에 관한 성경 연구 교재를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집필하였으며 이 시대 건강한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교회를 위해 ‘말씀사역’ 일환으로 출간한 책이다.

김순정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목회학석사(M.Div) 논문으로 최홍석 박사의 지도로 조직신학 분과의 ‘칼빈의 인간’이란 논문을 제출하여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김길성 박사의 지도로 ‘칼빈의 교회 표지’라는 주제로 신학석사(Th.M) 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자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신학적 이론의 토대 위에서 2천 년 동안 고민해 왔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왔던 선조들의 성경적, 신학적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왔다.

저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다루고 있다. 구속역사에 대한 개념으로 각 권에 대한 계시의 의미를 신약성경과 유기적인 통일성에 의해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구속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대성했다. 또한 각 권에 대한 구속 역사적 관점으로 정리한 후 각 권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설교문을 작성했다. 이러한 시도는 성경을 공부한 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적용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모세오경을 율법의 범주에서 연구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신약과 연계하여 적용하여 설명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오랜 역사적인 발자취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모세오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마치 유대 종교적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자인 김순정 목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전제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존립을 해체하는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자기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신지식에 관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지식과 구원이 가능한지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성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창조-타락-구속’을 통해 씨앗의 형태로 발아된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모세오경을 거쳐 선지서, 시편에 이어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계시의 현장을 강한 필치로 전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라는 성경적, 신학적 진술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를 수 없는 고지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눅 24:44), 또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설교자들이 중요한 해석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이같은 해석의 원리에 따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본

서를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모세오경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법을 기본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세오경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법을 기본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해석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에서 떠난 해석은 윤리 도덕에 그치고 영혼 구원과 신앙에 무관한 해석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사도들과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생명을 헌신하고 노력해왔음을 기억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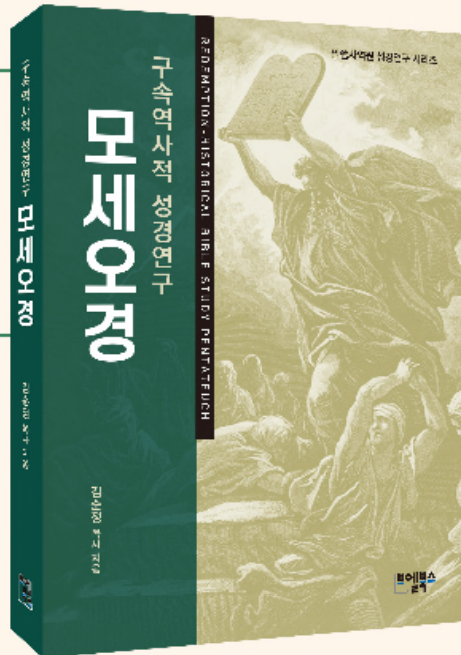
교회에서 모세오경에 관한 성경 공부 교재 선택이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본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본서를 교재로 삼아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이해하기 난해한 모세오경에 대한 풍성한 진리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은 이단자들이 창궐하고 있음에도 이 시대에 성경 공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성경 공부, 사경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미디어 시대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성경 공부에 노출된 한국교회에 본서를 통해 모세오경에 대한 성경 공부와 신앙교육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적 행위의 근거로서 성경, 특히 모세오경 공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확고해 지리라 본다.

저자의 다른 저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 읽기』는 신구약 성경을 개론적으로 공부하는데 매우 탁월한 교재이다. 저자의 저서는 이 시대 교회에 밝은 빛을 비춰주기에 충분하다.

(소재열 목사)

책 구입 문의(세미나 강사 문의) : 010-2838-5944
정가 18,000원, 통신으로만 보급합니다.

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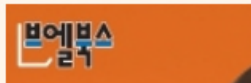


김순정 목사 자음 / 신국판, 352쪽 정가 18,000원

책 구입 문의(세미나 강사 문의) : 010-2838-5944
통신으로만 보급합니다

본서 활용도

1. 본서는 모세오경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구속역사적 관점에서 체계화 했다.
2. 신자라면 누구든지 본서를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다.
3. 교회에서 성경공부 교재로 활용하면 매우 유익하다.
4. 성경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성경공부 교재이다.



목사 신분의 변호사

교회의 아픔을 함께하며 변호합니다.

김대준 변호사의 약속

하나, 현직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하나, 교회 분쟁 사건은 교회
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 교회 문제로 많은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 교회를 지키고 구성원
의 권리를 중요시 합니다.



변호사

김대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7층 (서초동, 엘렌타워)

T 02-3477-3002 / F 02-3477-4530, 핸드폰 010-5624-4530

999kdj@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NOOMC.COM



나눔의교회

Nanoom Presbyterian Church

정체성

가치성

사명성

정체성 : 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니라, 또다른 교회
 사명성 : 어디에 있느냐 보다 어디를 향하느냐는
 역동적 교회
 가치성 :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사명

소명을 통한 사명 3:9-10
 사명을 통한 믿음 4:20
 믿음을 통한 축성 14:14
 축성을 통한 영광 33:22-23



담임 김상운 목사
 대표회장

부목사 이명민 시무장로 이경섭
 한은총 김신원
 최장현

32832 충남 계룡시 금암로 140 (금암동 15-4)
 T.042)840-9182 F.840-9993



표어 SLOGAN

머물고 싶은 교회

대대로 섬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원로목사 김 조



당장목사 김 태영

2023 VISION VISION STATEMENT

생수를 구하라 생수의 근원/바다/총만을 사모하는 공동체
 생수로 채우라 생수가 솟아나고 마셔 갈증을 해소하는 공동체
 생수를 누리라 관계를 새롭게 기쁨을 총만하게 깨달음을 깊게하는 공동체
 생수를 나누라 생명/능력/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

Church that wants to stay

핵심가치 CORE VALUE

삼락교회의 핵심가치는 예배입니다



Church that wants to serv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hurch where God is the Lord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락교회

■ 01672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28길 66
 ■ 홈페이지 주소 : www.samrak.org

■ 교회 : 02-938-1332 FAX : 02-938-2595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중앙교회**

- ① 영구목표 : 선교하는 교회 · 교육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 ② 교회표어 :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성도



담임목사 **한기승**



부 목 사 : 이원재 무암목 장원석 오인성 김기재
 교 육 목 사 : 조봉근 최원강 박경식 황성일 김성환 양진영 신은근
 협 동 목 사 : 황완수 서병량 이시우 장천익 이동희 양영기 김은수 김대자
 유장식 최경근 김철명 천봉옥 오정욱 신우기 김훈곤 이형진
 선 교 사 : 정도연 현병식 양희형 강경수 김 용 배만웅 권기섭 정준기
 강 도 사 : 박준희 송원준
 전 도 사 : 박임자
 교육전도사 : 이대재 김경의 박기영
 협동전도사 : 권형순 송예찬

시 무 장 모 : 서한기 이현구 양화경 이 완 이건홍 최장출 송철욱 박래성 김재관
 여동철 봉성순 이남휴 신대영 박종석 신경식 이준술 천경수 윤순일
 여주일 김한애 양성권 이연섭 박희철 최민호 박희복 설태환 문정송
 우수호 유영삼 신연호 경희역 조길형 김동현 이남규 이재정 김남일
 영 모 장 모 : 박태웅 김재길 박종남 김충현 박해천
 은 퇴 장 모 : 이동석 변두석 정운신 한만섭 양승원 박민재 정태근 권혁중 박영근
 김소현 홍성권 김태연 김경중 양삼순 장재성 김옥달 임영진 정관동
 고희대 방향남 김훈남 손두현
 합 동 장 모 : 정해용 오명준
 후 직 장 모 : 조동운 송광검 경일수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신대학교 내. www.gijooongang.org

교회사무실 : 062) 523-9419 (F) 062) 522-4834

| 삶 의 기쁨 과 희망 주는 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교회
YELUNG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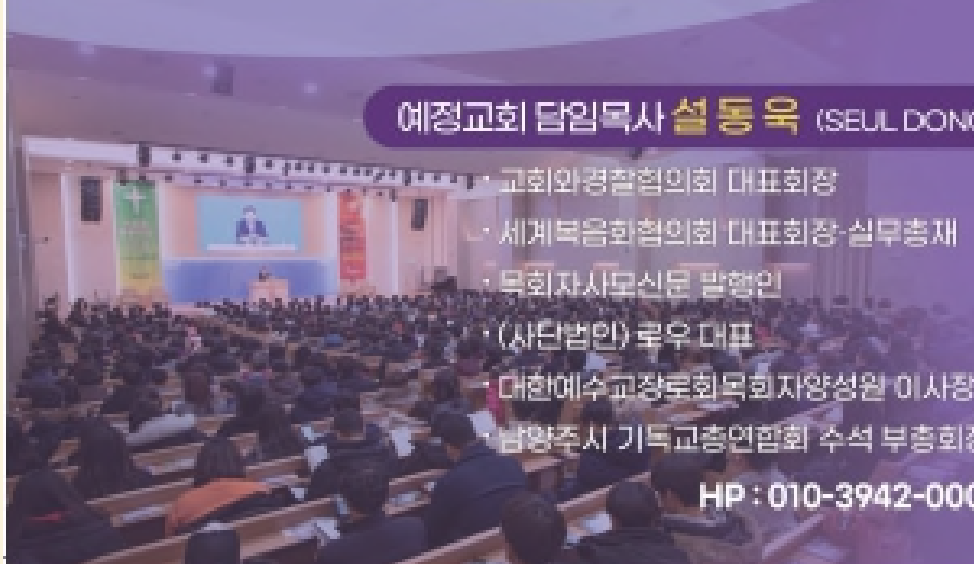
교회창립 1988.10.22



예정교회 담임목사 설동욱 (SEUL DONG WOOK)

- 교회와경천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실무총재
-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 (사단법인) 로우 대표
- 대한예수교장로회목회자양성원 이사장
- 남양주시 기독교총연합회 수석 부총회장

HP : 010-3942-0002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담임목사 **민 찬 기**

파송선교회	이항홍(고양신) 임흥기(해미) 김호익(강민) 김소니아 전애슬과 영원(은혜) 황동욱(김해) 신진택(서천) 노하림(백곡) 조은우(우동) Lady Woo 박정영(영문)
부목사	송재로 임재경 박 훈 노기택 최우현 황해남 김성진 정규철 이연교
협동목사	한상진 문대순 신홍운 주현일 오홍길
군중목사	김호근
교육전도사	이미진 이상현 이상현 이선경 정여준 김영삼
장로	노승근 황현수 이흥수 임관수 임구물 박상희 안형훈 이종후 마경수 이영진 강서운 박종표 장국진 김약해 최익현
사역장료	권동호 오선종 서종욱
협동장료	이정식 이영훈 고영현
은혜장료	김고영 김재운 박해진 서창익 손영만 송동희 안종대 이종필 이훈필 장희재 정찬오 차순훈 최익규 최을영 최대근
지회	조산목(호신) 반영주(호) 장병희(서문) 장일대 이영현(여우) 신영진(영문) 이태선(SOG)
순회간	곽은경 김현실
미지노	김소아 박은경 기수진 황형배

교회소개

1981년 1월 4일 설립되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목표

1. 온 세계에 복음 전파를 주력하는 교회
2.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훈련하는 교회
3. 은사를 개발하여 이웃을 섬기는 교회

예수인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1.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를 추구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2. 전도와 세계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증인공동체입니다.
3.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개발로 이웃을 섬겨 나가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4.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예수인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1. 독거노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치매 및 장애우를 위한 다양한 섬김
2. 어르신과 영세민을 위한 이매용 섬김
3. 주거 환경 불량 가정의 집수리를 통한 섬김
4. 매우 문화 강좌 개설 운영 5. 주차장, 탁구장, 체육관(농구, 축구, 배드민턴), 카페, 분당, 세미나실 등 교회의 모든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학부총동원
예수인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새에덴교회

다시 본질로!
Back to **Essence** Again!

다시 생명으로!
Back to **Life** Again!

다시 사명으로!
Back to **Mission** Again!



담임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대표적인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입니다.”

소강석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마틴루터킹 국제 평화상을 수상하고 한국 목회자 최초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록에 등재되었으며,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목회자요, 현대적 지성과 예술적 감성, 광야의 영성을 겸비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복음의 사회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교회 생태계와 건강한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에덴교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TEL 031-896-1000 www.saeeden.kr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상계성전



공릉성전

주제 : 다음세대를 세우며
노약자를 섬기는 교회

표어 :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합 3:2)

담임목사 | 김 종 준
동사목사 | 임 광

협동목사 문용식(홍신대 교수) 황선우(홍신대 교수)

부 목 사 서영민 고영복 노만설 김용식 장상원 김명철 박호수 정영우
곽성중 이연식 오신영 정진정 박경원 권야긴 강동근 황성구
서정도 안민호 최동훈 강주민 김경호

영어담당 Naveed Karamat

협동목사 박 년 민병남 정성봉 한석조 이성기 김영일 김영호 한도영

전 도 사 박현숙 김형순 한난초 백옥남 윤원정 이미영 이복순 최현숙
권하은 김연희 김영선 이규금

명예전도사 김혜순

협동전도사 김현예 백미자 송영숙 장금순 김시은 이규숙 안순연 홍연임
김순애 박월순 손정숙 김명옥 이지애 김경희 이윤선 김순희

교육전도사 정문영 황서현 김진영 유의숙 조요한 유영필 홍셋별 소 건

원로장로 김광대 최문용 김제덕

시무장로 배길태 신현운 임병진 양영규 김재도 이광수 류연선
유진상 김선욱 최상범 안완석 임윤오 나종식 전홍배
이선구 이경열 오형석 김용철 임현종 민영기 윤균혁
오창현 박동영 한상열 박영균 노춘만 김민규 한종욱
백경순 김용선 이명남 이종환 김철희 이영수 이철성
김수환 김대웅 장상권 강학신 임영택 황인춘 권영보
서재광 강현민

협동장로 홍인철 김영순 황환기 김원배

은퇴장로 김동진 이화춘 김봉갑 편우범 윤홍진 변창성 홍준기
박정도 김평남 김용섭 김광수 박병균 박석이 이기상
신용선 남극영

찬양지휘 시 온 찬 양 대 명성민 월벨루아찬양대 권종구
가브리엘찬양대 이현희 호산나찬양대 조요한
예루살렘찬양대 금교동 임마누엘찬양대 박선규
두나미스찬양대 강응관 관 현 악 단 안효성 허윤선

피 아 노 최정은 김은주 김봉균 김주희 이지현 이체영 김동민
권영미 김문정 이선희 박소영 최혜미

오 르 간 정태양 오항민 전옥미 이우경 이지영 정미진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예수교
정령교회

꽃동산교회

F l o w e r g a r d e n C h u r c h

01703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420(상계2동 320-11) TEL | 937-8334~6 FAX | 936-2707 공릉성전 www.flowergarden.or.kr